

중국의 《외상투자법실시조례》 발표, 한층 더 명확해진 외상투자법률

News Flash
China Tax and Business Advisory
2020년 01월
Issue 1

개요

2019년 3월 15일 제 13회 전국인민대회 2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¹⁾)이 통과되어 외상투자의 진입, 촉진 및 보호 등 방면에서 통일 규정을 정립하고, 중국의 새로운 외상투자법률제도의 기본 프레임을 확립했습니다. 《외상투자법》에서 확정한 주요 법률제도를 명확화/세분화하고 《외상투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2019년 12월 26일 국무원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제 723호 국무원령을 승인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²⁾)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외상투자법》의 원칙성 규정과 요구사항을 더욱 세분화 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실시조례》의 발표는 외상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법치적으로 보장합니다.

2019년 3월 뉴스플래시³에서 우리는 《외상투자법》을 상세히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는 《실시조례》가 《외상투자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히 한 외상투자의 기본 사항, 내외자기업 평등 대우 보장, 외상투자 보호 강화, 외상투자 관리 규범화,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과도기 설정 및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의 법률 적용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PwC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의 격식을 따라 총 6장 49조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상투자법》에서 확정된 주요 법률 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화/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의 기본 사항 명확화

《실시조례》는 외상투자 장려 및 촉진, 외상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외상투자관리 규범, 외상투자환경 최적화를 제창하는 한편,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외상투자자는 법에 의거 중국 자연인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와 공동 투자할 수 있음
-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경내투자 시 법률 적용
-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제정 및 조정절차 등



普华永道

“외국투자자는 중국자연인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외상투자법》 발표 후 중국 자연인이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신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문을 해소하였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경내투자 시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를 적용”한다는 표현은 중국이 외상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에 대해 “Look through 원칙”을 적용하여 외자로 보아 감독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상투자법》에서 “외상투자”는 “간접투자활동”을 포함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2018 년과 2019 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앞다투어 전국 차원의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범구 차원의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고, 새로운 개방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으며,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범 개방을 지속하여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 년 10 월 30 일, 국무원은 《외자를 더욱 잘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국발[2019]23 호 4)을 발표하여, 전국 및 자유무역시범구의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2020 년에는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자지분 비율을 51% 미만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취소할 것임을 언급하여 금융업에 대한 외자 투자 개방에 “패스트 패스”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0 년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여 더 많은 영역에서 외상 독자 경영을 허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내/외자기업 평등 대우 보장

《외상투자법》은 “투자촉진” 장에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비교적 원칙적인 평등 대우 규정을 제시했으며, 《실시조례》는 내/외자기업 평등 대우 보장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정부부서는 정부자금배정, 토지공급, 세금감면, 자격허가, 표준제정, 사업신고 및 인력자원 정책 등 방면에서 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기업 발전 지원 정책을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 표준, 산업 표준, 지방 표준 및 단체 표준의 제정과 개정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표준 제정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음.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내/외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하며, 외상투자기업에만 강제성 표준 기술 요건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해서는 안 됨.
- 정부부서는 외상투자기업의 로컬 시장 및 로컬 산업의 정부구매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저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됨.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됨.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정부구매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문의, 질의 또는 소송을 할 수 있음.
-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 중국 경내 또는 해외에서 주식, 회사채 등의 증권을 공개 발행할 수 있으며, 기타 방식의 공개/비공개 용자, 외채 용자 등 방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

내/외자기업 평등 대우 보장 외에, “투자촉진” 장에서 중국은 외국투자자들이 특정 산업, 분야, 지역에 투자하도록 장려 및 선도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이 그 중국 내 투자수익으로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할 경우, 법에 의거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 년 6 월 30 일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 장려산업목록(2019 년, 개정판)》⁵을 발표하여 외상투자 장려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현행 조세정책에 따르면, 투자 장려류 목록에 대해 외자기업은 조세, 토지 등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8 년 9 월 발표된 《외국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직접 재투자 시 원천소득세를 잠정면제하는 정책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8]102 호)와 함께, 외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상투자보호 강화

외상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상투자법》은 “투자보호제도” 장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실시조례》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수용)해야 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차별 없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징수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따라 즉시 보상해야 함. 외국투자자가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부의(复议)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법으로 외국투자자의 화폐, 금액 및 송/수금 횟수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됨.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홍콩/마카오/대만 근로자의 급여소득과 기타 합법적인 소득은 법에 의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신속공동보호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지적재산 분쟁의 다원화된 해결 체계를 완비하며,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함.
-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는 아니됨. 행정기관 및 그 관계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외상투자기업의 비즈니스 기밀을 엄수해야 함.
- 지방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행정구역 조정, 정부 세대교체, 기구 또는 기능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배해서는 아니됨.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상의 이유로 정책공약, 계약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과 그 직무, 운용 등 규정을 명시함. 예를 들어,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부간 연합회의제도 수립, 지방의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진행에 대한 가이드 및 감독, 민원처리 규칙, 방법, 처리기한 등 보완 및 발표.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겪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합법적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처리 시스템은 외상투자기업과 그 투자자에게 행정부의 신청, 행정소송 제기 외의 또다른 합법적인 해결루트를 제공합니다.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은 상무부 주관부서의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외상투자관리 규범화

외상투자관리 절차 규범화 측면에서 《실시조례》는 하기 사항을 명확화 했습니다:

- 외상투자의 투자항목 심사/비안 필요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함.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 명단을 공표해야 함.
- 외상투자정보 보고는 필수적, 고효율, 편리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등과 함께 외상투자 정보보고의 내용, 범위, 빈도 및 구체적인 절차를 발표할 예정임.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의 경우, 해외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의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 구축” 요구를 다시 반영했으나, 세부적인 규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상투자 정보보고 제도 실행을 위해 상무부는 2019년 12월 31일에 이미 《외상투자 정보보고 방법》(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령[2019]2 호 6)과 《외상투자 정보보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상무부공고[2019]62 호 7)를 발표하여 외상투자 정보보고의 범위, 주체, 내용, 방식 등을 더욱 세세하게 제시하여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정보보고 의무 집행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과도기 설정

《실시조례》는 “외자 3 법”⁸에 따라 설립된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외상투자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회사법》, 《파트너십회사법》등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조직형태, 조직구조를 조정하고 변경등기할 수도 있고, 기존 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구조 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법에 따라 조직형태, 조직구조 등의 조정 및 변경등기 처리를 하지 않은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 회사가 신청하는 다른 등록 사항을 처리해 주지 않으며, 그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구조가 조정된 이후에도, 기존 합병/합작의 각 방이 계약서상 약정한 지분 또는 권익의 양도방법, 수익분배방법, 잔여재산분배방법 등은 계속 약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의 법률 적용

“외자 3 법”에서 홍콩/마카오/대만 투자는 원칙적으로 외상투자를 참조하여 관리되고 있었으나, 《외상투자법》은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의 법률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콩/마카오/대만 투자 관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실시조례》는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의 내륙투자는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대만지역 투자자의 대륙 투자는 《대만동포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 규정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들의 근심을 덜어주었습니다.

핵심 요약

《외상투자법》의 연계된 행정 법규로서,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의 원칙성 규정을 더욱 세분화 하고, 법률제도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외상투자의 적극적인 촉진과 외상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외상투자관리 규범화에 있어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국적 변경 후 법률 적용이라는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실시조례》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 그 국적 변경 전에 이미 중국 국내에서 투자했던 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외상투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유사한 사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외국 국적을 포기한 자연인이 국적 변경 전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외상투자법》을 여전히 적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외상투자법》은 앞서 《외상투자법(의견수렴본)》에서 규정했던 “계약통제(VIE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법률, 행정규정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라는 단락의 조항은 남겨두었습니다. 《실시조례》 또한 이 단락의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VIE구조와 실무 진행 등은 여전히 “회색지대”로 남겨졌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발표된 《실시조례(의견수렴본)》의 “중국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100% 투자기업의 Round-Tripping 투자는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으나, 최종 발표된 《실시조례》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향후 상무주관부서가 정관 또는 규범성 문서 등의 방식으로 해외 투자기업의 Round-Tripping 투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발[2019]23호문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상의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석[2019]20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법부도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외상투자법》이 확실히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PwC는 향후 《외상투자법》과 관련된 법규 변화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PwC의 관찰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gov.cn/xinwen/2019-03/20/content_5375360.htm
2.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 723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2/31/content_5465449.htm
3. 자세한 내용은 PwC뉴스플래시 2019. Issue 12 참조
4. 《외자를 더욱 잘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9]23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07/content_5449754.htm
5. 《외상투자기업 장려산업목록(2019 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령[2019]27 호) 상세 내용은 PwC 뉴스플래시 2019. Issue 21 참조
6. 《외상투자 정보보고 방법》(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령[2019]2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1912/20191202926620.shtml>
7. 《외상투자 정보보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상무부공고[2019]62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1912/20191202927046.shtml>
8. “외자3법”이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말함.
9.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적용상의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석[2019]20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npc.gov.cn/npc/c30834/201912/c1cbc5a2b7c44e68bd9eb7829cf71af5.s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장병일 (86) (21) 2323-5491 byungil.j.ja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One-stop tax information platform of Shui Jie 2.0 version
Your exclusive tax think tank



iPhone
(iOS 10 or above)



Android
(Android 6.0 or above)



- For Android users, please scan the QR code to access to Tencent App store.
- Shui Jie web portal - <https://taxnews.pwchk.com>.



In the context of this News Flash, China, Mainland China or the PRC refer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excludes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aiwan Regi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is not meant to be comprehensive.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laws can vary widely based on the specific facts involved. Before taking any action, please ensure that you obtain advice specific to your circumstances from your usual PwC's client service team or your other tax advisers. The materials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ere assembled on 2 January 2020 and were based on the law enforceable and information available at that time.

This China Tax and Business News Flash is issued by the **PwC's National Tax Policy Services** in China and Hong Kong, which comprises of a team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dedicated to monitoring, studying and analysing the existing and evolving policies in taxation and other business regulations in China, Hong Kong, Singapore and Taiwan. They support the PwC's partners and staff in their provision of quality professional services to businesses and maintain thought-leadership by sharing knowledge with the relevant tax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academies, business communities, professional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Long Ma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Please visit PwC's websites at <http://www.pwccn.com> (China Home) or <http://www.pwchk.com> (Hong Kong Home) for practical insights and professional solutions to current and emerging business issues.

www.pwccn.com